

관 사 관 리 규 정

제 정 2007. 04. 20.
개 정 2010. 09. 10.
개 정 2015. 10. 12.
개 정 2018. 07. 2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.) 소유재산인 관사의 이용·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10.12.>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연구원 임직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 또는 임차한 건축물로서 관사로 이용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.

제3조(관리부서) 관사의 관리는 행정지원부에서 주관한다. <개정 2018.7.20.>

제4조(입주자격) 관사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9.10.>

1. 상근 임원 및 직원. <신설 2010.9.10.>
(당해지역 거주 상근 임원 및 주택보유 직원 제외)
2. 연구원의 필요에 의하여 초빙하는 국내외 전문가. <신설 2010.9.10.>

제5조(사용허가 및 기간) ①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신청 <별표 1>에 의하여 원장이 이를 허가한다.

②관사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1월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제6조(입주 우선순위) 관사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상근임원, 초빙 전문가 등 <개정 2010.9.10.>

2. 기타 원장이 정하는 순 <개정 2010.9.10.>

제7조(동거제한) 관사입주자는 직계가족 이외의 자와 동거하여서는 아니 되며, 동거 가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용자의 의무) ①사용자는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이용하여야 하며, 사용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.

③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.

④사용자는 관리부서의 허가 없이 관사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제9조(관사운영비의 부담) ①관사 사용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(전기료, 수도료, 난방비, 오물수거료 등)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.

1. 건물의 신·개축 및 증축비,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, 보일러·에어컨 등 기계기구 설치비, 통신가설비, 수도시설비, 조경시설비 등 기본 시설비
2. 건물유지수선비·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

제10조(변상조치)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(시설·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)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.

제11조(퇴거)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, 이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.

1. 연구원 임직원의 신분을 상실한 때
2. 휴직자(신병치료를 위한 휴식은 제외)
3. 관리부서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
4. 당해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0.9.10.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10.12.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8.07.20.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<개정 2015.10.12.>

관사 사용허가 신청서

1. 소 속 :
2. 직 급 :
3. 성 명 :
4. 관사위치 및 면적

소 재 지	면 적		비 고
	대 지	건 물	

5. 사용신청기간 :

위와 같이 관사 사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(신청인)

(인)

재단법인 전북연구원장 귀하